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문 화 예 술 과

구미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자	이정희 의원

구미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이정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자: 이정희 의원(1인)
찬 성 자: 김재우·김정도·김종화·김지식
김원섭·김춘남·김현경·김효석
신용하·이상호·이정호·이탕모
장진호·전희정 의원(14인)

1. 제안이유

구미시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친환경적 운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ESG 가치를 도입하고 행사 추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실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미시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공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나. 기본계획(안 제5조)

다. 실태조사(안 제6조)

라. 우수행사 선정·평가(안 제7조)

마. 교육·홍보(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나. 부서검토: 문화예술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ESG를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문화·체육·관광 행사를 개최·운영하는 데 있어 ESG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1. 탄소 배출 및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적 고려
2.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고려
3. 투명성 및 협업 등 거버넌스의 고려
4. 그 밖에 ESG 실천을 위한 사항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실천”이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요소를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기획·운영 및 평가 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체육·관광 행사”란 구미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

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ESG 실천 현황 분석
3. ESG 실천 프로그램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ESG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ESG 실천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우수행사 선정·평가) ① 시장은 ESG 실천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행사를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행사의 선정, 홍보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한 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또는 홍보책

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경상북도 및 도내 시·군, 국내외 기업, 기업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ESG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문화예술과

조 례 명	구미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 주요 사항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기본계획(안 제5조)

○ 실태조사(안 제6조)

○ 우수행사 선정·평가(안 제7조)

○ 교육·홍보(안 제8조)

□ 검토 결과

○ 문화·체육·관광 행사 운영에 ESG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행사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문화·체육·관광 행사 운영 전반에 ESG 관점 도입을 통한 친환경·사회적 가치 확산 및 공공행사 질적 수준 제고

○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6조(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

○ 안 제8조(교육・홍보):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 방안을 담은 의안이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김명동(☎054-480-6602)